

남녀고용평등법*, 장애인고용법* 시행령

*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**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■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범위 확대 (시행: '19년 1월 1일)

'19년 1월 1일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남녀 노동자 간 임금, 승진, 정년 등에 대한 차별 금지 조항이 전면 적용된다.

* 현재는 남녀고용평등법 상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남녀 노동자간 임금(8조), 임금 외 금품(9조), 교육·배치 및 승진(10조), 정년·퇴직 및 해고 등에 대한 차별금지(11조) 조항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

■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(AA)* 적용범위 확대 (시행: '19년 1월 1일)

*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(AA: Affirmative Action): 쉰 국가, 공공기관 및 500인 이상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여성고용기준(여성 고용비율 및 관리자비율)을 충족하도록 유도하여 고용평등을 촉진하는 제도

내년부터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까지 AA 시행계획 수립·제출 의무를 부과한다.

* 현재는 민간은 500인 이상 근로자 고용기업에 대해서만 AA 제출의무 부과

■ 난임치료휴가 절차 신설(연간 최대 3일, 최초 1일 유급) (시행: '18년 5월 29일)

오는 5월 29일부터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휴가*를 받을 수 있다.
(연간 최대 3일, 최초 1일 유급)

* 난임치료휴가를 원하는 노동자는 휴가 시작 3일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

■ 육아휴직 요건 완화 (시행: '18년 5월 29일)

계약기간이 짧은 비정규직 또는 신규 입사자도 육아휴직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. 그간 사업주는 1년 이상 근속한 노동자가 신청할 경우 육아휴직을 부여할 의무가 있었으나, 1년보다 근무기간이 짧은 비정규직이나 신규 입사자는 육아휴직을 보장받기 어려웠다.

* 이번 개정으로 해당 사업장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이를 허용해야함(이전: 1년 이상)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-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조치의무 강화 (시행: '18년 5월 29일)

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사업주에게 신고 가능

- 사업주의 사실 확인 조사의무,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한 근무 장소 변경·유급휴가 부여 등의 조치 의무를 신설 (위반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)
-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노동자와 피해노동자에 대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 금지, 위반 시 벌금형 강화 (2천만원→3천만원)

■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에도 사업주에게 배치전환·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화

-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에도 사업주에게 배치전환·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의무화 (위반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)

■ 성희롱예방교육 강화

-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 (위반시 3백만원→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)
-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후 그 내용을 게시 (위반시 5백만원 이하 과태료)
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■ 모든 사업주 - 연간 1회, 1시간 이상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실시 의무 (시행: '18년 5월 29일)

교육 내용은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,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,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,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등이다.

교육은 집합, 원격, 체험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, 사업주는 고용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교육*을 하거나, 고용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.

* (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) 사업주 자체 교육이 가능하도록 표준교육교재, 동영상 무료 배포

* 정부는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전문 강사를 금년 내 1천명 양성 계획

* 다만, 영세소규모 사업주의 교육의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,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부장관이 보급한 교육 자료를 배포·게시하는 경우에도 교육한 것으로 인정

- 한편, 사업주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*의 과태료가 부과된다. * 1회 미실시 100만원, 2회 200만원, 3회 이상 300만원